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

부장검사	차장검사	지방공소청장/지청장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년 제 호

청구일자			결정일자	
청구인	성명(명칭)			
	생년월일(등록번호)			
	대리인	성명		
		생년월일		

○ 결정 주문

[] 청구를 인용(認容)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

[] 청구를 기각한다.

[]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.

[] 청구를 각하한다.

○ 피해인정재산

-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:
-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:

○ 결정 이유 (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)

-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

(예시 : . . .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)

. . .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